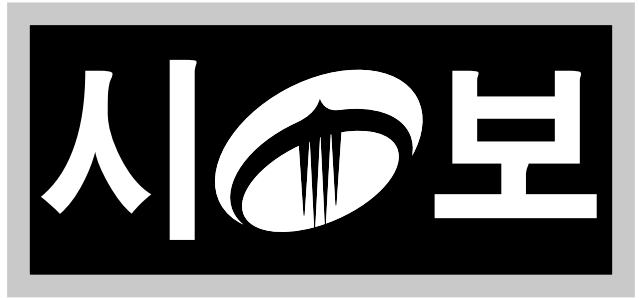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3호

2009. 4. 7(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시장시지사항 2

◀ 조 례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제 923호)11

◀ 공 고 ▶

○공 인 공 고(제2009-526호) 28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4. 1)</p>	<p>으로 삼을 것임.</p> <p>○ 우리시의 역점시책 추진과제의 철저한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역점시책, 홍보사항, 민원사항과 해결에 대한 역할, 부서간 협조 등 모든 일이 포항시의 일이라 하겠음. - 전 직원들이 인지하고 특히, 간부들이 철저히 파악하여 시책의 대 시민홍보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p>○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물자절약, 쓰레기 감량 등 전부서에 해당되고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전 부서는 적극 동참하여 부서별 필요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p>○ 영일만항 개항 의미에 대한 전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일만항은 철강산업이후 포항의 또다른 성장(물류) 산업으로 개항하게 되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모든 시책은 전공무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바람. <p>○ 모든 행사에 시승격 60주년 의미를 가미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행사는 시승격 60주년 의미에 맞추어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특히,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행사기획을 잘하기 바람. 	<p>전 부 서</p> <p>전 부 서</p> <p>전 부 서 (항만정책팀)</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체전 우승에 적극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 활동(도민체전 우승)으로 시민에게 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각 부서는 기업체와 서포터즈들의 선수단 방문지원을 독려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바람. ○ 차질없는 영농준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철을 맞아 관련부서는 자재준비, 일손돕기 등 필요부분을 챙기고 준비하여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기 바람. ○ 산불예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시 초동진화 대응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특히, 논·밭두렁 소각 등을 확실히 계도하고 헬기 및 방송망을 이용 홍보방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전화응대 및 민원응대에 낮은 점수를 받고, 계약부서 청렴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바람.. ○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은 수도권, 광역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엄청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임. -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 해주기 바람. 	<p>전 부 서 (체육지원과)</p> <p>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p> <p>전 부 서 (도시녹지과) (남,북구청)</p> <p>전 부 서 (감사담당관실)</p> <p>전 부 서</p>

시장 지시사항(개별지시)

- 일본중부방송(CBC) 오타니사요PD 포항촬영 인터뷰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34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이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지역을 안내하면서 잘못 설명하고 또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 관광지 해설만으로는 관광가이드가 곤란하므로 - 예산을 들여서라도 포항을 전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 육성이 필요함. 	문화관광과
'09-035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역사관 책임있는 통역봉사자 배치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역사관 통역자원봉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설명만 하고 방문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 포스코와 협의를 통하여 역사관을 책임질 수 있는 안내자 배치가 요구되고 있음 	자치행정과
'09-036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홍보관 기념품 판매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홍보관 방문시 기념품을 주고 있으나, 다양한 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념품 판매점 운영이 필요 	자치행정과
'09-037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과 일본 나고야시, 도요타시 연계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과 나고야는 대도시가 아니므로 양 도시간 포스코와 도요다를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경제통상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38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홍보시 울릉도와 경주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홍보하면 효율적임 - 포항만을 홍보하기보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울릉도나 경주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임 	일본T/F팀 문화관광과
'09-039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의 일본어 홈페이지에 관광지 자세한 소개필요 - 일본어 홈페이지에 관광지의 간단한 소개만 있어 부족하므로 관광지별 자세한 내용수록이 필요함 	정보통신과
'09-040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의 특산물 맞추어 관광상품 개발 - 상하이의 맞추어가 인기가 좋은데 포항은 대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러 가지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투어 상품을 만들면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임. 	일본T/F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4.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초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결 가능한 민원이 대부분임 - 특히, 양 구청장과 읍면동장은 처음부터 적극 대응하기바람. ○ 도민체전 개막식에 타도시와 차별되게 대규모 응원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경북 제일의 도시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당면 주요시정업무의 추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단체 법정 교육시 시정홍보 추진 - 시민의 날 행사 내용 및 일정 조속히 결정 - 중고유도 연맹전, 도 교육감 선거 준비철저 - 족구장 장소 결정후 조속건설 추진 -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각 부서별 적극적으로 실행 - 동빈부두정비, 북부테마거리조성 등의 차질없는 시행 - TP 2단지 조성, 출범 조속히 실시 - 도로변 방음벽 투명유리 교체시공 조속 시행 - 도로변 빈 전주 및 지춥대 철거 확행. - 용흥 고가도로 옆(양반과 머슴 식당옆) 청소시행 - 보경사 소나무 기증제안 적극 이행. - 클린로드 야간(12시 이후)분사로 도로청결 유지 - 동해면 조형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바람.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체육지원과)</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 style="text-align: center;">"</p> <p>(체육지원과)</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전 부 서 (동빈내항복원팀) (도시녹지과)</p> <p>(산업단지지원팀)</p> <p>(건설과)</p> <p style="text-align: center;">"</p> <p>(청 소 과)</p> <p>(도시녹지과)</p> <p>(북 구 청)</p> <p>(해양수산과)</p>
<p>'09-0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비사업 아이디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이 지속발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하며, - 각 부서별 전문가 의견수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국비사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p>기획예산과</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초 일본 I/R 및 출판기념회 세부내용, 일정 등을 조속히 확정하기 바람. - 초청장 송부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기 바람, - 행사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기바람. 	<p>항만정책팀 일본T/F팀 (문화관광과)</p>
'09-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OB모임 회원을 명예대사로 위촉 활용 - 외교관 OB(전직 외교관모임) 회원을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직장교육 특강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p>경제통상과</p>
'09-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별 6.25전사자 유해발굴 관련정보 수집 - 리통장 회의시 '지역주민의 증언 및 구술' 은 유해 발굴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됨을 홍보하고 적극 수집하여 발굴조사단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p>주민생활지원과</p>
'09-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소규모 등) 업무분야를 검토하기 바람. - 개별공장 입주시 공장부지 지원 등 업무분야를 검토해주기 바람. 	<p>자치행정과</p>
'09-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조성 공로자 시민의 날 표창 추진 - 장학금 조성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시민의 날 행사시에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하여 격려하고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p>사회복지과</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약칭인 '대포고속도로' 의 명칭변경을 검토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영일만 고속도로' 등 희망과 영일만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바람. 	건설과
'09-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조속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건설 예산을 추경때부터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 - 유강에서 고수부지간 자전거도로 건설을 Posco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건설과
'09-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뒤 야산 경작지를 차폐하는 '신의대' 식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학동 MBC뒤 야산 경작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물 등을 차폐할 수 있도록 '신의대' 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도시녹지과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7일

포항시 조례 제 923호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5조의2” 를 “법 제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중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주된 도로에서 증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시의회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

제10조중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 를 “법 제11조·제14조·제

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 로 한다.

제10조의2중 “제8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 를 “법 제13조제2항” 으로 한다.

제11조중 “법 제15조제1항” 을 “법 제20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의2중 “법 제18조제2항” 을 “법 제2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 을 “법 제27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전 현장조사업무
-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③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 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중 “법 제23조제3항” 을 “법 제27조제3항” 으로 한다.

제14조의2중 “법 제26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를 “법 제35조, 영 제23조”

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32조” 를 “법 제42조” 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 를 “법 제45조제1항제2호” 로 한다.

제18조중 “법 제46조제4항” 을 “법 제54조제4항” 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49조제1항” 을 “법 제57조제1항” 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중 “법 제51조제3항” 을 “법 제60조제3항” 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법 제53조제1항” 을 “법 제61조제1항” 으로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앞에 “(대지사이에 도로·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53조제2항” 을 “법 제61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법 제53조제4항” 을 “법 제61조제4항” 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중 “영 제113조제1항제2호” 를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영 제113조제2항” 을 “영 제27조의2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영 제113조제3항” 을 “영 제27조의2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영 제113조제4항” 을 “영 제27조의2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법 제48조” 를 “법 제56조” 로 하고, 제2호중 “법 제51조” 를 법 제60조” 로 한다.

제28조의2중 “법 제50조” 를 “법 제58조” 로 하고, “법 제36조” 를 “법 제46조” 로 한다.

제42조 제1항중 “법 제69조의2제1항” 을 “법 제8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69조의2제4항” 을 “법 제80조제4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u>법 제5조의2</u>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u>영 제14조제6항</u>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u>법 제6조</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u></p> <p>5. <u>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u></p> <p>② <u>영 제14조제6항</u>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p>

현 행	개 정 안
<p>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 ④ (생략)</p>	<p>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은 교통전문가이어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u>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u> 및 <u>제72조</u>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u>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u> 및 <u>제83조</u> ----- ----- ----- ----- --</p>
<p>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u>법 제8조의3제2항</u>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p>	<p>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u>법 제13조제2항</u> ----- ----- ----- ----- -----</p>
<p>② ~ ③ (생략)</p> <p>제11조(가설건축물) ① <u>법 제15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가설건축물) ① <u>법 제20조제1항</u> ----- ----- ----- ----- -----</p>
<p>1 ~ 6 (생략) ② ~ ③ (생략)</p> <p>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u>법 제</u></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u>법 제</u></p>

현 행	개 정 안
<p>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한다.</p>	<p>22조제2항 ----- ----- ----- -----</p>
<p>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u>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 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 할 수 없다.</u></p>	<p>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u>법 제27조제1항 ----- ----- ----- ----- ----- ----- ----- ----- -----</u></p>
<p>1. <u>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u></p> <p>2. <u>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u></p> <p>3. <u>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u></p> <p>4. <u>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u></p>	<p>1. <u>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u></p> <p>2. <u>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u></p> <p>3. <u>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u></p> <p>4. <u>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u></p>

현 행	개 정 안
<p>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p> <p>② (생략)</p> <p>③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접수하여야 하고, 협회는 접수순서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 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u>법 제23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u>법 제27조제3항</u></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u>법 제26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u>의 규정에 의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u>법 제35조, 영 제23조</u> -----</p> <p>-----</p> <p>-----</p> <p>-----</p> <p>-----</p> <p>-----</p> <p>-----</p> <p>-----</p>
<p>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u>법 제32조</u>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u>법 제42조</u></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도로의 지정) <u>법 제35조제1항제2호</u>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p>	<p>제17조(도로의 지정) <u>법 제45조제1항제2호</u> -----</p>

현 행	개 정 안
<p>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61조제4항 -----</p> <p>-----</p> <p>-----</p> <p>-----</p> <p>-----</p> <p>---</p>
<p>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p> <p>②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한다.</p> <p>④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 -----</p> <p>-----</p> <p>-----</p> <p>-----</p> <p>-----</p> <p>-----</p> <p>② 영 제27조의2 제2항 -----</p> <p>-----</p> <p>-----</p> <p>-----</p> <p>③ 영 제27조의2 제3항 -----</p> <p>-----</p> <p>-----</p> <p>④ 영 제27조의2 제4항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p> <p>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p>	<p>1. 법 제56조 ----- ----- -----</p> <p>2. 법 제60조 ----- ----- -----</p>
<p>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p> <p>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p> <p>------(법 제46조 -----)</p> <p>----- ----- ----- ----- ----- ----- -----</p>
<p>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p> <p>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 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p> <p>① 법 제80조제1항 ----- ----- ----- -----</p> <p>② 법 제80조제4항 ----- ----- ----- -----</p>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4. 7

포항시공고 제2009-526호


공 인 공 고

-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09. 4. 7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로 인한 개각 등
-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붙임 1. 신조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포항시남 구청장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신규
포항시 정신보건 심의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거 신규설치
포항시 정신보건 심판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거 신규설치

붙임 2. 폐기공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포항시남 구청장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노후로 폐기
----------------------------------	-------------------	---	------------